수상 바지(Barge)선 이용 건설공사 안전작업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1편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규정에 따라 수상의 바지(Barge)선 작업과정에서의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수상에서 바지(Barge)선을 이용한 작업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바지(Barge)선"이라 함은 강, 운하, 바다 등에서 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만든 바닥이 평평한 선박으로서 자항식과 비자항식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바지선은 비자항식으로 예인선의 도움이 필요한 선박을 말한다.
 - (나) "개인부양장치(PFD, Personal Flotation Device)"라 함은 개인용 수상 구명복이라 하며 의식 또는 무의식 중 물에 빠진 사람의 입과 코를 수면위로 유지시켜 주는 개인용 보호구를 말한다.
 - (다) "방현재(Fender)"라 함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때 또는 계류 중에 생기는 충격력, 마찰력을 흡수하여 선박 및 부두 시설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완충물을 말한다
 - (라) "묘박(Anchoring)작업"라 함은 선박이 닻을 바다 속에 투입하여 선박을 정박 시키는 것을 말한다.